

신속처리 결과통보서
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
	대표자	
신기술·서비스	명칭	
신속처리 결과	[]	1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※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·절차 등 첨부(관계 법령 포함)
	[]	2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
그 밖의 안내 사항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기 후에 너 지 환경 부 장 관 직인

